2020년도 인권경영 이행계획

<2020.7.6.(월), 기획예산팀>

I 추진개요

□ 인권경영 추진배경

-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가
 - 최근 갑질논란 등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 적인 인권 보호 및 존중책임의 강화 필요성 증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8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에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것을 권고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및 **인권 존중·책임을 실현하는** 가교 역할

□ 인권경영 추진체계

목표

1단계 인권경영 정책 수립·공표 (인권경영의지 이행)/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이행)

3단계 인권침해 방지조치 실행(교육), 평가 (시정조치 이해)

4단계 피해자 구제절차 이행 (구제절차 마련)

주요 활동

- 인권경영 제도 마련
- 인권경영 선언·공표
- 내·외부 확산
- 자체 체크리스트 마련
- 기관운영 부문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 및 결과보고
- 인권경영 실행 ■ 교육자료 게시
- 구제절차 구축 ■ 구제절차 시행

- □ (주요실적) 2018년 11월 최초 인권경영 이행계획서 수립 후, "1단계 추진과제 및 2단계 일부과제"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인권경영 관련 규정 제정 및 인권경영헌장 작성·배포
 - 목적·적용범위, 일반원칙,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지침」 제정('19.12.27)
 - 내부 의견수렴을 통하여 10개 문항으로 작성된 인권경영선언문 공표 및 '인권경영헌장' 홈페이지 게시('19.12.10)
 -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역할 지정('19.12.27)
 - (기획예산팀) 계획 수립·이행,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총괄 담당
 - (인재경영팀)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 담당
 - 인권침해 접수·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의사결정기구인 「고충 처리심의위원회」 설치('20.4.28) 및 위원 구성('20.6.1)
 - 위원회 구성 현황 : 총 7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1명, 간사 1명)
 - * 성희롱, 성추행 관련 사항은 외부위원 2명 충원하여 조사·심의
 - 원내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인권 교육 실시** 및 인권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내부시스템에 게시
 - 행정부서장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19.12.27), 전직원 인권경영매뉴얼 배포('19.11.11), 인권 또는 갑질근절 관련 자료 월 1회 게시
 - 기관의 경영활동·운영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19.12.27)

- □ (추진방향) 2단계 추진과제 보완 및 3~4단계 추진과제 이행을 중심 으로 인권경영 추진
 - 2단계(인권영향평가 실시) 추진 계획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총 7개 분야, 총 113개 문항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구성(붙임 1) 및 점검 실시('20.8월)
 - · 총 7개 분야에 대하여 해당부서별 2~3명 이내 체크리스트 작성

연번	분야	소관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기획예산팀
2	고용상의 비차별	인재경영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인재경영팀
4	강제 노동의 금지	인재경영팀
5	산업안전 보장	시설안전팀, 총무구매팀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정보보안팀
7	환경권 보장	시설안전팀

-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총 4개 분야, 28개 문항으로 "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발굴(붙임 2) 및 점검 실시('20.8월)
 - ·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연구그룹별 5명 이내로 체크리스트 작성
- 각각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후, 그 결과를 '고충처리심의위원회' 평가 실시
- 3단계(인권경영 실행과 공개) 추진 계획
 - 인권경영 추진사항(이행계획,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등) 및 인권 교육자료 홈페이지 상시 게시·공개

○ 4단계(구제절차의 제공) 추진 계획

인권침해 구제절차 도식화('20.7월) 및 현행 제도 평가('20.9월)

〈인권침해 사건 구제절차(안)〉

	- 신청사유 : 인권 침해 또는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① 신청	- 신청방법 : 고충처리심의위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접 수 처 : 고충처리심의위원*

1

	- 접수된 신청내용 검토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고충심의위원)
② 신청 및 확인	-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부서(인재경영팀) 접수대장 등재
	- 위원장 승인을 거쳐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1

③ 위원회	- 조 사 자 :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조사·심의	- 조사방법 : 신고자 진술 청취, 신고서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1

④ 결과 통보	- (결과통보)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받은 1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

1

⑤ 시정 및 조치	- 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인정시 위반사항 시정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한
(a) 46 % TA	임직원에 대한 전보·징계·재발방지 등의 후속조치 이행

*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 총 6명(내부 5명, 외부 1명)

연번	성명	직급	내선번호	이메일	비고
1	김상연	책임행정원	200	sykim@kbri.re.kr	위원장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당연직)
2	허향숙	책임연구원	310	sookhoe72@kbri.re.kr	고충처리위원(당연직)
3	문지영	책임연구원	470	jymun@kbri.re.kr	여성과학기술인 책임담당관(당연직)
4	정윤하	선임연구원	393	yunha.jeong@kbri.re.kr	성희롱 고충상담원
5	임병섭	선임행정원	252	bslim@kbri.re.kr	고충처리위원(당연직)
6	서홍덕	청렴시민감사관	-	suh7150@hanmail.net	외부위원

〈붙임 1〉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종합통계표

	이슈	답변결과						
연번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 용 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 노동의 금지							
5	산업안전 보장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환경권 보장							
	합 계							

□ 세부 평가 지표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지표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1)
	1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인	2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권 존 중	3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정 책 선	4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연구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언 (6)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소계						
인	1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권 영 향 :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평 가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정 기 적	4	기관운영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실 시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6)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소계						

			답변결과					
항목		지표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1)
인 권 경 8	1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영 제 도	2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화 를 이	3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위한필	4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요 조 치 (5)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한다.						
		소계						
	1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인 권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경 영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성 과 (7)	5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연구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6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7	인권경영 성과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소계						

					답변결과			
항목		지표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1)
	1	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구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덴마크 HRCA ²⁾
제 절 ··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차 마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련 (6)	5	피해자가 연구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소계 합계								

¹⁾ 별도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201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지표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

²⁾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2006), "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HRCA) Quick Check"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뚕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1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고 용 상	2	직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체크라스트 문항 활용
차	3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체크라스트 문항 활용
별 (5)	4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체크스트 문항 활용
	5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체크스트 문항 활용
		소계						
	1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 용 상	2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남 녀 ·	3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비 차 별 (6)	4	직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5	직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6	여성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소계						

					답변결고	ŀ		
뚕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비 정 규 직	1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근 로 자 비	2	비정규직 직원임을 이유로 연구원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차 별 (3)	3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소 계						
외 국 인	1	외국인 직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근 로 자	2	외국인 직원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비 차 별 (3)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소계						
		합계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2	지표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노동조합 등을 통해 직원이	예	보완	Ol IO	정보	해당	비고
2			필요	아니요	없음	없음	_
2	노동조한 등을 통해 직원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덴미크 HRCA
3 !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직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4	정기적으로 노조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 계						
1 3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덴마크 HRCA
5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4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직원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직원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직원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직원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직원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직원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답변결과			
항목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단 체 교	1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섭 보	2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및성	3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실 한 이	4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연구원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행 (5)	5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소계						
노동조합 부자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지 대한적 조치(2)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소계						
	<u>고기</u> 합계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답변결과			
항목		지표	예	보완	아니요	정보	해당	비고
			ગ	필요	νі-μι	없음	없음	
	1	모든 종류의 강제노 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덴마크
	2	노력하며, 직원이 이를 이해할 수						HRCA
-		있도록 배려한다.						
71	_	직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강	3	신분증 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제		요구하지 않는다.						
노	4	직원이 원하지 않는 의무적						
동		│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직원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금								
지	5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8)		강요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6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직원은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7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직원은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8	이후에 연구원을 그만둘 수 있다.						
		소계						
잣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자 회 사	1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협 력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력 회 사 에	2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에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1		감시한다.						
의한 강제노동								
강 제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漢	3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덴마크
)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HRCA
예 방 (3)		않는다.						
(3)								
		소계						
		합 계						

▶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답변결과			
항목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왕 웞	비고
	1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2	연구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차 업 창 안	3	연구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전 (5)	4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5	유해물질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소계						
임 산 부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직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_ 및 장	2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하 인 바 :	3	임신을 한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보 호 (4)	4	장애인들이 연구원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소계						

					답변결과			
항목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필	1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 장 비 제 공	2	직원이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직원에게 제공되고, 직원이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및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육 실 시 등	4	직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5)	5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소계						
산 업 재 해	1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근로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다.						
자 지 원 (3)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덴마크 HRCA
	소계							
		합계						

▶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답변결과			
항목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보 안 담 당 직	1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원 에 의	2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한 인 권 침	3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해 방 지 (4)	4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소계						
		합 계						

▶ 분야 7. 환경권 보장

					답변결과			
항목		지표	예	보완	아니요	정보	해당	비고
			બા	필요	орен	없음	없음	
	1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환		있다.						
경	2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경		수집하고 평가한다.						
영 #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체	3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제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수		연구원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립	4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및	-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유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직원을						
(5)	5							
		교육하고 훈련한다.						
		소 계						
<u> </u>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환	1	직원에게 제공한다.						
경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정	2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보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의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직원, 고객,						
공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개	3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3)		이들과 협의한다.						
	1	소계						
+1								
<u>환</u>								
경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문		원칙을 견지한다.						
제								
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한	한 ² 예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예								
		실시한다.						

					답변결과			
뺭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방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적	3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		조치를 취한다.						
근.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의	4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원	4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칙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5)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오염
(3)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백대제발)
		소 계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1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2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 상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계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획	3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수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립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5)	4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연구원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5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소계						
		<u> </u>						$ \times $
		합 계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붙임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통계표

				답변결과		
연번	이슈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활용					
2	연구과제 수행					
3	사업장 내 노동인권					
4	기관 연구 시설 및 장비					
	합 계					

세부 평가 지표

▶ 분야 1.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활용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1	연구과제 선정과정은 차별의 요소 없이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시행되었는가?						
2	연구과제 선정에서 거래처의 임금 지불능력을 확인하고 있는가?						
3	연구과제 선정에서 현지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요소가 고려되는가?						
4	연구결과 활용 전 인권침해 등의 요소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가?						
5	연구결과 활용에 있어 법, 제도,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계						

▶ 분야 2. 연구과제 수행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1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인권경영 실천을 이행하는가?						
2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가?						
3	연구로 인해 수행지역에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가?						
4	연구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가?						
	계						

▶ 분야 3. 사업장 내 노동인권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1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모든 물리적 폭력, 특히 언어와 성폭력으로부 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한다.						
3	피해자가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사 진 정절차 활용 등 구제제도를 소개하고 지원한 다.						
4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경조사비, 간식 제공 등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5	모든 직원이 양질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 장한다.						
계							

▶ 분야 4. 기관 연구 시설 및 장비

지 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1	모든 연구 시설/장비를 국제인권, 환경, 산업안 전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2	연구 시설/장비에서 지진, 해일 등 외부위험이 발생한 경우 긴급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발생시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4	연구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국 제인권·환경기준을 준수하는 협력사의 제품을 구매한다.						
계							